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21일, 조경태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 의원)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에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54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불이행 사례 및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사례를 고려할 때, 예방적 기능의 강화를 통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이후 원상회복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요건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측면을 보완하고,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하여 새로시행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려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7. 수정안의 | 요지 |
|---------|----|
|---------|----|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요건을 수정하고,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5. 7.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은 대규모사업 등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예치를 의무화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 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요건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측면을 보완하고,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요건을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에서 규모 및 행위 등으로 수정함(안 제21조제7항 단서). 나.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신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제7항 단서 중 "목적 및 규모"를 "규모 및 행위"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8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21조(원상회복 등) | 제21조(원상회복 등) | 제21조(원상회복 등) |
| ① ~ ⑥ (생 략) | ① ~ ⑥ (현행과 같 | ① ~ ⑥ (개정안과 |
| | 승) | 같음) |
|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 7 | ⑦ |
| 제1항에 따른 원상회 | | |
| 복 의무와 제2항에 | | |
| 따른 원상회복 명령 | | |
| 의 이행을 담보하기 | | |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에는 제17조제1항에 | | |
| 따라 점용·사용 실시 | | |
| 계획을 승인할 때 또 | | |
| 는 같은 조 제2항에 | | |
| 따른 신고를 받을 때 | | |
| 에 대통령령으로 정 | | |
| 하는 바에 따라 그 | | |
| 원상회복에 필요한 | | |
| 비용에 해당하는 금 | | |
| 액을 예치하게 할 수 | | |
| 있다. | 다만, 공유수면 점용 | |
| | ·사용의 목적 및 규 | <u>규모 및 행</u> |
| | 모 등이 대통령령으 | <u>위</u> |
| | 로 정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원 상회복에 필요한 비 용에 해당하는 금액 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 제2조(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제 21조제7항 및 제 8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 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 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 과에 관한 적용 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 | 법 시행 당시 원 |
|--|------------------|
| | <u> 상회복명령을 이</u> |
| | 행하지 아니하고 |
| | 있는 자에 대해 |
| | 서도 적용한다. |

법률 제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 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제5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이행강제금) ①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 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 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

- 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한다.
- 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8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 ⑥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 •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 고를 받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 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 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 <단서 신설> 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 모 및 행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 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 게 하여야 한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 설>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상 <신 설>

<u>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u> 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54조의2(이행강제금) ① 공유수 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제21조제2항 또는 제54조제2항 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 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 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 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 면허관청은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 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 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 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